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1-01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령집

2013. 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II. 농산분야 농수산물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	85
III. 농산물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법령 해설	99
IV.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169
V. 농림수산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201

Ⅰ.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9	제1조(목적)..... 9	제1조(목적)..... 9
제2조(정의)..... 9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9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12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12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12
제4조(자조금의 용도)..... 16		
제5조(출연 및 지원)..... 17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17	
제2장 의무자조금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19		제5조(의무농수산물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1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22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 23 제9조(총회의 설치 등)…………… 24 제10조(총회의 운영)…………… 31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20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22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22 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 한도의 변경 등)…………… 23 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24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25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28 제13조(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28 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30 제15조(실비 지급)…………… 31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33		
제12조(대의원회)..... 34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공고 등)..... 34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34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35	
	제5조(대의원의 보궐선거)..... 40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41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41		제17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 출방법 등)..... 41
		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42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의 해임)..... 44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45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46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4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49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49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51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53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49 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51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52 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53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농수산물 비 중기준 등)..... 53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57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58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59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60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 의 내용 등)..... 57 제26조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 부자)..... 5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61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61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62		
제4장 보칙		
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64	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64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65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65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6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66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66
제32조(지도·감독)····· 69		제30조(지도·감독 결과 통보)····· 69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1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1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72		
제35조(벌칙)····· 7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양벌규정)..... 72		
제37조(과태료)..... 73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3	
부칙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76	제1조(시행일)..... 76	제1조 (시행일)..... 76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76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76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77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76	제3조 (경과조치)..... 77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7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77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78	제1조(시행일)..... 78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78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78	
제7조(생략)..... 80	[별표]..... 80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2.2.22, 법률 제11350호 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p> <p>1.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p>	<p>제정 2013.2.20, 대통령령 제24387호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정부조직법)</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3.4.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p> <p>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p> <p>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p> <p>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p> <p>라. 그 밖에 농수산물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6.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p> <p>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p> <p>4.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p> <p>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p> <p>7.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p> <p>8.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p> <p>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p>		<p>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양식 방법, 재배·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통합에 필요한 사항 <p>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합 대상인 각 자조금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8명 이내</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p> <p>가. 법 제9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장·부의장·감사</p> <p>나. 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의장·부의장·감사</p> <p>다.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임의자조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감사</p> <p>3. 관련 학계 전문가 1명,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1명 및 유통 분야 전문가 각 1명</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2항에서 "대표"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장</p> <p>2. 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p> <p>④ 공동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나 임의자조금위원</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p>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p> <p>6. 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p> <p>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의무거출금 또는 임의거출금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 제5조제1항에</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출연금등을 받으려는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연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금의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 2. 자조금의 조성 규모, 조성방법 및 최근 5년간(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의무자조금</p> <p>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 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 실적</p> <p>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 내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신청의 타당성 및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출연금등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5조(의무농수산물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3. 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 방법</p> <p>4.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p> <p>5.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p> <p>6.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자조금단체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는</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에는 투표권자를 확정하여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 안건, 투표 일시 및 투표 장소를 적은 소집통지서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전원(全員) 또는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투표는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p> <p>③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p> <p>④ 자조금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 		<p>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p>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사업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p> <p>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p> <p>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p>		<p>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p> <p>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p> <p>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변경 사유와 목적</p> <p>2.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 단체에 총회를 둔다.</p> <p>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p> <p>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p>		<p>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총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총회의 감사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총회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① 총회 의장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p>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선</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선거 장소 및 후보자 등록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단체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p> <p>⑤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最多) 득표한 후보자(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하 "최다득표자"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만으로 의장을 선</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출한다.</p> <p>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 의장으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p>⑦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⑧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의장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① 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총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3조(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① 총회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p>② 총회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 의장 또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이 경우 추천받은 사람의 수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많은 표를 얻은 사람(2명 이상이 같은</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의 표를 얻어 감사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부터 차례로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하고,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다음 득표자를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p>있다.</p> <p>②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5조(실비지급)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에서 같다)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p> <p>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p> <p>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p> <p>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운용계획 및 결산 4.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p> <p>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p> <p>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p> <p>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p> <p>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p> <p>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공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p>	<p>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p> <p>① 의무자조금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p> <p>②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및 장소,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p>	<p>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업자"는 각각 "대의원"으로 보고,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업자 10명"은 "대의원 5명"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표자"는 "대의원"으로 보고, 제13조제2항 전단 중 "농수산업자 5명"은 "대의원 2명"으로 본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은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산업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농수산업자의 수가 10만명 이상: 150명 이상 250명 이하2. 농수산업자의 수가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80명 이상 150명 미만3. 농수산업자의 수가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50명 이상 80명 미만4. 농수산업자의 수가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5. 농수산업자의 수가 1천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p>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확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특별자치도별</p> <p>2. 시·군·자치구별</p> <p>③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별(이하 "선출구별"이라 한다)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농수산업자 수와 생산량·출하량은 법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p> $\text{선출구별 대의원 수} = \left(\frac{\text{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text{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수 전체}}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선출구역 내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text{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전체(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p>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p> <p>1.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해당 선출구역의 농수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선거인</p> <p>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p> <p>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의무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p> <p>⑦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⑧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p> <p>1.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당선. 이 경우 해당</p>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무자조금단체의 당선자 수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두어야 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p> <p>2.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⑨ 의무자조금단체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간지 2. 농수산물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투표 방법과 그 밖에 대의원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5조(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缺員)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수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두어야 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p>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p> <p>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p> <p>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p>	<p>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p>	<p>제17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p> <p>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p> <p>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p> <p>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p> <p>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p> <p>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p> <p>1. 선출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p> <p>2. 총회의 감사</p> <p>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p> <p>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재선출 및 재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p>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p> <p>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p> <p>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산물 관련 업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 단위의 농수산물 관련 비영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p>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 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 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 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p> <p>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p> <p>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p> <p>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p> <p>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p> <p>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p>		<p>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p> <p>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p> <p>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p>		<p>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 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p>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②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에 관한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p>		<p>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p>		<p>으로 납부할 수 있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p>		<p>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의하여 정한다.</p> <p>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p> <p>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p> <p>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농수산물 비중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생산량 또는 생산액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해의 전전년도 생산량 또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물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의자조금</p> <p>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p>		<p>제25조(임의농수산물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 방법 4.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26조(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23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8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본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p> <p>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p> <p>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p>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p>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p> <p>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p>		<p>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관리한다.</p> <p>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p> <p>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p>		<p>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이월액 및 해당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의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 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업자의 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균 거래가격. 이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가격의 통계가 없을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p>	<p>4. 수출량 및 수출액</p> <p>5. 수입량 및 수입액</p>	<p>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p> <p>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p>		<p>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경제·경영 분야, 재무·회계 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로 모두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을 외부전문기관으</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p>		<p>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자조금</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자조금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금단체의 일반 현황과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생산·유통·수출입 등 내·외부 환경 분석 2. 자조금의 조성, 운용 실태 및 성과에 관한 분석 3.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대표성 4. 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 가능성 등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p>		<p>책</p> <p>5. 제30조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 등의 반영 정도</p> <p>⑤ 자조금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지도·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p>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 	<p>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p> <p>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p> <p>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p> <p>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p> <p>3.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p> <p>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1350호, 2012.2.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4387호, 2013.2.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 2013.4.1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를 삭제한다.</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야 한다.</p> <p>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를 삭제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p> <p><280>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라목,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6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p> <p><18>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3호, 제26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제11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p>	<p><19>부터 <76>까지 생략</p>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물부 소속 공무원</p> <p>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물부 소속 공무원</p> <p><281>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별표]</p>	

[별표]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300	500	700
나.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 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 퇴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사. 법 제21조제3항(법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자조금을 폐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400	600	900
아. 법 제21조제7항 전단(법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자.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차.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6호	300	500	700
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II. 농산분야 농수산물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

[목 차]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89</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품목별 농수산업자 및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p> <p>제3조(품목별 농수산업자)..... 8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p> <p>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90</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관리위원회 운영</p> <p>제6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90</p> <p>제8조(업무대행)..... 91</p> <p>제10조(실비지급)..... 9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자조금의 운용비용과 의무거출금의 납부 등</p> <p>제11조(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92</p> <p>제13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92</p>	<p>제2조(적용범위)..... 89</p> <p>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89</p> <p>제7조(관리위원수)..... 91</p> <p>제9조(관리위원장의 직무)..... 91</p> <p>제12조(의무거출금의 납부)..... 92</p>
--	--

제6장 회계규정	
제14조(회계설치).....	93
제16조(주요항목).....	93
제18조(예산 변경).....	94
제20조(계약의 방법).....	95
제22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95
제2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95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5
제28조(입찰보증금).....	96
제30조(선급금 지급).....	97
제32조(준용).....	97
부칙	
제1조 (시행일).....	97
제3조 (경과조치).....	97
[별표]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98
제15조(계정의 분류).....	93
제17조(운용비용의 범위).....	93
제19조(예비비).....	94
제21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95
제23조(입찰공고).....	95
제25조(예정가격).....	95
제27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96
제29조(계약보증금).....	96
제31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97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97
제4조 (재검토기한).....	97

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정 2013.4.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품목별 농수산업자 및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제3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품목별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묘: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산물
2. 육묘
3. 버섯류
4. 분화
5. 절화
6. 무·배추
7. 약용작물류
8. 대파
9. 쪽파

제3장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

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
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
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
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실행 실적
2. 농수산업자 영입·교육 실적
3.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 실적
4. 조사·연구 실적
5. 그 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③ 평가결과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의 출연금등을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의무·임의자조금단체에 따라 기본배정과 차등배정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배정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위원회 운영

제6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의 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농수산업자(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지역별 농수산업자, 품목별 생산량 또는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 수를 배분하고, 총회 개최 전에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위원을 배분한 경우에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농수산업자는 해당지역의 농수산업자 5명(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위원의 선출은 총회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그 밖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총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위원 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관리위원 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한다.

제9조(관리위원장의 직무)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
3.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제10조(실비지급) 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

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자조금의 운용비용과 의무거출금의 납부 등

제11조(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대납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 농수산업자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담당과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농수산업자, 대납기관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⑥ 수납기관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법 제20조제1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2. 「종자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종자업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업체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7.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장 회계규정

제14조(회계설치)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
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제16조(주요항목)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이란 별표의 계정과목에서 항 및 목을 말한다.

제17조(운용비용의 범위) 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가. 급여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나. 제수당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

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다. 법정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라.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마. 일용직임금 :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2. 경비

가. 회의비 :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나. 복리후생비 :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다. 기타경비 :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18조(예산 변경) 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장 계약규정

제20조(계약의 방법)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품목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2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입찰공고)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농수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제27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7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농수산업자, 농수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제28조(입찰보증금)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제29조(계약보증금) 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28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선금금 지급) ① 선금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사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2013-6호, 2013.4.11>

제1조 (시행일) 동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자조금에 대응하는 보조금의 지급요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12-28호)을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동 요령 시행이전에 「자조금에 대응하는 보조금의 지급요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12-28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동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검토기한) 동 요령은 2015. 4. 15.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17조 관련)

관	항	목	세목
○○○ 자조금 사업비	01 소비홍보	0110 광고	세부사업명
		0120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02 수급안정	0210 수급	세부사업명
		0220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03 유통구조개선	0310 물류개선	세부사업명
		0320 포장재개선	세부사업명
		0330 유통개선	세부사업명
		0340 유통협력	세부사업명
		0350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04 경쟁력제고	0410 품질향상	세부사업명
		0420 생산성 향상	세부사업명
		0430 안전성 제고	세부사업명
		0440 원료·자재구입비 지원	세부사업명
	05 수출활성화	0510 수출마케팅지원	세부사업명
		0520 전문가·바이어초청	세부사업명
		0530 해외시장개척	세부사업명
		0540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세부사업명
		0550 수출물류지원	세부사업명
	06 교육 및 정보제공	0610 거출홍보	세부사업명
		0620 교육	세부사업명
		0630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07 조사연구	0710 조사·연구용역	세부사업명
		0720 연구회	세부사업명
		0730 성과평가	세부사업명
	08 선거	0810 총회의장 선거	세부사업명
		0820 대의원 선거	세부사업명
	09 징수수수수료	0910 거출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10 운영관리	1010 인건비	세부사업명
		1020 회의비	세부사업명
		1030 복리후생비	세부사업명
		1040 자산취득비	세부사업명
		1050 기타경비	세부사업명
	11 예비비	1110 예비비	

Ⅲ. 농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법령 해설

목 차

1. 자조금단체 설립 및 폐지.....	103
가. 공통사항.....	103
나. 임의자조금 설립 및 폐지.....	104
다. 의무자조금 설립 및 폐지.....	107
라. 자조금단체 통합.....	111
2. 조직.....	114
가. 총 회.....	114
나. 대의원회.....	116
다. 관리위원회.....	117
라. 사무국.....	120
3. 자조금 조성.....	121
가. 용도.....	121
나. 재원.....	122
다. 거출금 납부, 대납 및 수납기관.....	126
라. 과오납의 환급.....	129
4. 예산집행	129
가. 회계 및 예산규정.....	129
나. 자조금 운용 및 관리.....	133
다. 계약규정.....	136

5. 선거사항.....	140
가. 총회의장·부의장·감사 선출.....	140
나.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 등 선출.....	143
다. 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자격·선출 등.....	146
6. 통계작성·관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위임.....	148
가. 통계의 작성·관리 권한 위임.....	148
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149
7. 자조금 운용 평가.....	150
8. 관리감독 및 보고사항.....	154
가. 지도감독.....	154
나. 지도감독 결과 통보.....	154
다. 승인 및 보고사항.....	155
라. 기존 단체 보완사항.....	156
9. 벌 칙.....	158
가. 벌금.....	158
나. 과태료.....	159

1. 자조금단체 설립 및 폐지

가. 공통사항

1 (대상품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법 제2조 제1호)

- *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①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③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산업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3조제2호(농업인), 제3조제3호(농업경영체), 제3조제4호(생산자단체), 그 외 품목별 농산업자*(법 제2조 제2호)

- * 그 외 품목별 농산업자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및 고시)
- ①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 ② 인삼: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 ③ 참다래: 유통업자
- ④ 그 밖에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1) 육묘: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3 (자조금단체) 해당품목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법 제2조 제3호)

- * 법 부칙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13. 2. 23.)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봄

-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2013. 2. 23)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농산자조금의 설치)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산자조금 또는 임의농산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법 제3조)

-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
-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

* 농산물 품목의 통합·분리 가능한 품목

- 친환경농산물, 육묘, 버섯류, 분화, 절화, 무·배추, 약용작물류, 대파, 쪽파

나. 임의자조금 설립 및 폐지

1) 임의자조금 설치

1 (설치계획서 내용)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임의자조금의 명칭,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임의거출금의 납부대상,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설치계획서 제출)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22조)

*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

- ①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의 명칭
- ②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 ③ 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 ④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⑤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3 (설치계획서 승인) 품목담당과는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
- 위의 요건에 충족하여 자조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또는 생산액, 출하량, 출하액) 비중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미확보시 보조금 지원 중단하나 사업시행 3년차의 전국 재배면적·생산량 중 1개 항목이 최초 사업시행 전년과 대비하여 10% 이상 증가할 경우 1년 연장 가능(최장 5년 이내)
 - * 단, 3년차의 통계치가 시기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전년 통계치를 적용하여 판단
 - 점유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였더라도 차후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공식통계 활용

2) 임의자조금 폐지

1 (폐지요건) i)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1항)

ii)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임의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임의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봄(법 제27조 제2항, 제21조 제4항 준용)

2 (폐지절차) ①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의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법 제27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준용)

* 공표방법(3개 중 1개 선택) : 이 설명자료에서의 공표는 동일함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2개 충족되어야 함)

② 위원장은 폐지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의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7조 제2항, 제21조 제3항 준용)

③ 위원장은 찬반투표 결과 또는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임의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하여 폐지된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 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법 제27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준용)

④ 위원장은 임의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임의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에는 즉시 임의자조금단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임의자조금단체를 통한 임의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함

(법 제27조 제2항, 제21조 제7항 준용)

- 임의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임의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임의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함(법 제27조 제2항, 제21조 제7항 준용)
- ⑤ 임의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임의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임의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함.(법 제27조 제2항, 제21조 제8항 준용)

다. 의무자조금 설립 및 폐지

1) 의무자조금 설치

- ❶ (설치계획서 내용)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의무자조금의 명칭,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의무거출금의 납부대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등 포함(법 제6조 제1항)
- ❷ (설치계획서 제출)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품목담당과로 설치이유와 목적, 의무거출금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5조 제 1항)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

- ① 의무농수산자조금의 명칭
- ②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 ③ 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 ④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⑤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 ⑥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며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5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50% 이상
- 차후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년 이내에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공식통계 활용

3 (설치계획서 승인) 품목담당과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의 타당성 등을 고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4 (설치계획서 투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법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법 제6조 제1항)

5 (투표의 절차 및 방법) ① 자조금단체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시행규칙 제6조)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

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표권자를 확정하고,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 안건, 투표 일시 및 투표 장소를 적은 소집 통지서를 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전원(全員) 또는 대의원에게 발송

- ③ 투표는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
- ④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
- ⑤ 자조금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함
- ⑥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에 의한 투표 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함

6 (투표결과 공표)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어느 하나의 매체*를 통해 공표(법 제6조 제2항)

* i) 일간지, ii) 농수산 관련 신문, iii)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 의무자조금 폐지

1 (폐지요건)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법 제21조 제1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생산량 또는 생산액은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해의 전전년도의 생산량 또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함
- *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를 말함. (시행규칙 제 24조 제1항)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음(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21조 제6항)
- ③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봄

- 2 (폐지절차)** ① 의장은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법 제 21조 제2항)
- ② 의장은 폐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1조 제3항)
- ③ 의장은 찬반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 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법 제21조 제5항)
- ④ 의장은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i)의결되거나 ii)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에 따라 의무자조금

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iii)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함.(법 제21조 제7항)

- 이 경우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함
- ⑤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함(법 제21조 제8항)
-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함

라. 자조금단체 통합

1 (공동준비위원회 설치)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설치계획서, 통합필요사항 등을 심의·의결(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2 (위원회 구성 및 운용) 공동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대의원회) 의장,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 위원 : 농수산업자 8명 이내,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대의원회)의 의장·부위원장·감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감사 중 4명 이내, 관련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 공동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공동준비위원회는 통합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시행규칙 제4조 제5항)

- 그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1 사업신청 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2014년도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조금단체는 총회(임의 자조금은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의결을 거쳐 2013년 3월말 까지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따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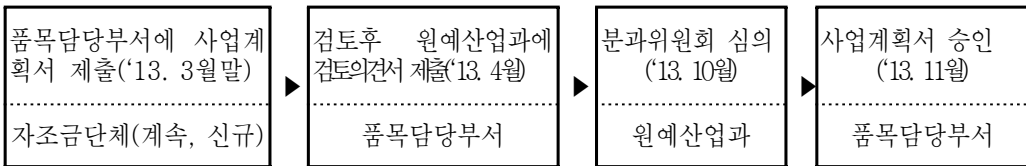
2 사업 승인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신청서류 등을 심사, 그 결과를 원예산업과에 제출

*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타당성 등을 확인

- 검토의견 제출시한 : 2013. 4월말



* 자조금 사업계획서(개조식으로 자율작성)

- 농림수산식품부내 자조금단체 심의를 위한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를 구성
 - 인원 : 7명 이내
 - 구성 : 담당국장, 사업담당과장(총괄, 품목), 전문가 등
-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는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조금단체 및 정부예산안 지원규모 심의·확정
 - 현장심사는 신규 품목에 대해 실시(주관 : 사업총괄부서, 협조 : 품목담당부서)

2. 조직

가. 총회

1) 임의자조금

- 임의자조금단체의 총회규정 또는 각 단체별로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

2) 의무자조금

1 (구성 및 임기)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임(법 제9조)

2 의장 등의 권한과 직무(시행규칙 제10조)

- (의장) 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감사)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총회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 이외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함
- (의장, 부의장, 감사 선출) 선거관련 조항 참조

3 총회 운영(법 제10조)

- (정기총회)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
- (임시총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 ② 재적 농수산업자(법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해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총회 정족수)**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예외)**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 의결사항)** (법 제11조)
 - ①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 *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폐지를 요청한 경우는 요청한 때부터 폐지된 것으로 같음하여 총회의결 불필요
 - ②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 * 변경사유와 목적,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총회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
 - ③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운영계획 및 결산
 - ④ 운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 항 : 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경쟁력제고,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 제공, 조사연구, 선거, 징수수수료, 운영관리, 예비비(**고시 별표 참조**)
 - 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⑥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 ⑦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 ⑧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 ⑨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⑩ 납부면제의 기준*

* 영세 농수산업자 및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에 대하여 납부면제 면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⑪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⑫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비지급)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법 제15조)

나. 대의원회

1) 임의자조금

o 의무자조금의 대의원회를 준용

2) 의무자조금

1 (설치요건)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법 제12조)

2 (설립계획서 제출) 의무자조금단체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3 (대의원 자격·등록·선거, 선출) 선거관련 조항 참조

4 (임기) 4년

5 (대의원회 운영) 총회의 운영사항 준용

다. 관리위원회

1) 임의자조금

1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법 제24조)

- ① 임의자조금의 폐지
- ② 임의거출금의 금액
- ③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사항*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임의자조금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로 함(법 제25조)

*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선출

- ①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 ③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3 (임기 및 선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2년, 나머지 위원 4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4 (운영)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자조금의 폐지 및 임의거출금의 금액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함.

2) 의무자조금

1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법 제13조 및 제16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 ①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 ② 의무거출금의 수납
- ③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 ④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 ⑤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의 지정
- ⑥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 ⑦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 ⑧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2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함(법 제14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 ①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기관 및 단체 수납기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 (2) 「종자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종자업체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업체

-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 (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7)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 ⑤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시행규칙 제18조)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 단위의 농수산 관련 비영리법인

-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3 (임기 및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년, 위원 4년. 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출(법 제14조)

- *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고시 제8조)

○ (선출방법 및 자격요건, 해임) 선거관련 조항 참조

4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14조 제5항)

-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5 (관리위원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수는 11명 이상 21명 이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함

6 (관리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고시 제9조)

- ①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 ②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
- ③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집행 등에 대한 감독
- ④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라. 사무국

1) 공통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당해 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2) 임의자조금

- (설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준용

3) 의무자조금

- (설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둘 수 있음 (법 제18조)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자조금 조성

가. 용도(공통) (법 제4조)

- ①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② 농수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③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④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 ⑤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⑥ 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⑦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해외연수사업 유의사항**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실적 평가결과 A등급 해당 단체에 한하여 타당성(연수목적, 인원, 연수내용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 총괄부서에 제출
- 해외연수는 자조금 사업비와 별도로 비용의 50%이상을 참가자가 자부담하여야 함(사무국 직원 1명 예외)

나. 재원(법 제7조)

㉑ (출연금)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급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의무거출금 또는 임의거출금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예산 내에서 지급(시행령 제2조 제1항)

- 이 경우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농수산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1)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고시 제5조)

- i.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
- ii.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
- iii.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 iv.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
- v.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2) (1)-iii.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

- i.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실행 실적
- ii. 농수산업자 영입·교육 실적
- iii.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 실적
- iv. 조사·연구 실적
- v. 그 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3) 평가결과는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

(4) 출연금등을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의무·임의자조금단체에 따라 기본배정과 차등배정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

o (지급신청)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단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품목담당과**로 출연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2조 제2항)

- (1). 자조금의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
- (2). 자조금의 조성규모, 조성방법 및 최근 5년간(운영기간이 5년 미만은 그 기간) 운영실적
- (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o (결정통지) **품목담당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신청의 타당성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출연금등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시행령 제2조 제3항)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 집행실적 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당해 단체의 자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품목 담당부서에 보조금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조금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자부담 우선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연도 종료 후 미 지출된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은 이월하여 익년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신청할 수 있음(단, 사용 잔액에 매칭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2 (임의거출금) 임의자조금단체가 정하되,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3 (의무거출금)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함(법 제8조 제1항)

-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음(법 제8조 제2항)

*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조)

(1). 변경 사유와 목적

(2).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

4 (지원금)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함

(1). 해당 의무·임의자조금 품목의 종사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임의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5 (기타) 의무·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법 제7조)

다. 거출금 납부, 대납 및 수납기관

1) 임의자조금

- o 거출금의 납부, 대납 및 수납기관은 의무자조금 규정을 준용

2) 의무자조금

■ (납부 및 대납)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법 제19조 제1항)

- (납부면제)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② 농수산업자는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대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함.(법 제19조 제2항)

-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대납기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납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 농수산업자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고시 제12조 제1항)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함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농수산업자, 대납기관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 할 수 있음.(고시 제12조 제5항)

④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0조)

2 (납부금 관리) 자조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고시 제12조 제2항)

3 (수납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음(법 제20조)

-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수납기관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수납기관)와 협의하여 정함(시행규칙 제21조)

- 수납기관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음.(고시 제12조 제6항)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음

*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시행규칙 제22조)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담당과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고시 12조 제3항)

-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고시 12조 제4항)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함

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⑥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4 (수납위탁기관)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20조 제1항 및 고시 제13조)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② 「종자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종자업체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④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가공업체

- 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 ⑥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과오납의 환급

1 (과오납 청구 및 확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 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법 제29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2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8조)

-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4. 예산집행

가. 회계 및 예산규정(공통)

1 (회계설치)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고시 제14조)

2 (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고시 제15조)

②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

③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음

(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임

(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

(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함.

3 (주요항목)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이란 별표의 계정과목에서 항 및 목을 말함.(고시 제16조)

< 별표 :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17조 관련) >

관	항	목	세목
○○○ 자 조 금 사업비	01 소비홍보	0110 광고	세부사업명
		0120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02 수급안정	0210 수급	세부사업명
		0220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03 유통구조개선	0310 물류개선	세부사업명
		0320 포장재개선	세부사업명
		0330 유통개선	세부사업명
		0340 유통협력	세부사업명
		0350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04 경쟁력제고	0410 품질향상	세부사업명
		0420 생산성 향상	세부사업명
		0430 안전성 제고	세부사업명
		0440 원료·자재구입비 지원	세부사업명
	05 수출활성화	0510 수출마케팅지원	세부사업명
		0520 전문가·바이어초청	세부사업명
		0530 해외시장개척	세부사업명
		0540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세부사업명
		0550 수출물류지원	세부사업명
	06 교육 및 정보제공	0610 거출홍보	세부사업명
		0620 교육	세부사업명
		0630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07 조사연구	0710 조사·연구용역	세부사업명
		0720 연구회	세부사업명
		0730 성과평가	세부사업명
	08 선거	0810 총회의장 선거	세부사업명
		0820 대의원 선거	세부사업명
	09 징수수료	0910 거출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10 운영관리	1010 인건비	세부사업명
		1020 회의비	세부사업명
		1030 복리후생비	세부사업명
		1040 자산취득비	세부사업명
		1050 기타경비	세부사업명
	11 예비비	1110 예비비	

4 (운용비용의 범위) 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고시 제17조)

(1). 인건비

- (가). 급여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 (나). 제수당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 (다). 법정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 (라).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 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 (마). 일용직임금 :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2). 경비

- (가). 회의비 :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 (나). 복리후생비 :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 (다). 기타경비 :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 보증금 등

5 (예산 변경) 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정의 분류 및 주요항목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함(고시 제18조)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음

- ③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음
- ④ 이외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6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음(고시 제19조)
- ②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예산의 변경(고시 제18조제4항)을 준용

- 7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고시 제31조)

나. 자조금 운용 및 관리

1) 공통사항

- (실비지급) 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고시 제10조)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자조금의 한도 및 산정기준 변경은 품목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결과를 사업총괄과(원예산업과) 통보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각각 총회의 의결(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공시
- 자조금단체는 2014. 2. 15까지 품목담당부서에 2013년도 자조금 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품목담당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2014. 3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조성액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 자료에 의거 지출
 - 품목결산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임의자조금

-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관리함(법 제26조)
-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시행규칙 제27조)

- (1). 전년도 이월액 및 해당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금액(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 (2). 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의무자조금

- 1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7조)
- ②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1개 매체를 선택하여 공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

* i) 일간지, ii) 농수산 관련 신문, iii)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음(고시 제11조)

- (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 (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계약규정

1 (계약의 방법)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②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품목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고시 제20조)

2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고시 제21조)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3 (계약서 작성의 생략)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고시 제22조)

4 (입찰공고)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농수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함.(고시 제23조)

- ②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5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고시 제24조)

-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 6 (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음(고시 제25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자조금운용요령 고시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제27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 7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고시 제26조)
-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고시 제27조)
- ②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농수산업자, 농수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로 함
-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
- ③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음
-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고시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함
- 9 (입찰보증금)**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고시 제28조)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 및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Ⅹ (계약보증금) 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고시 제29조)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고시 제28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함

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Ⅺ (선급금 지급) ① 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고시 제30조)

-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음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 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5. 선거사항

가. 총회의장·부의장·감사 선출

1) 임의자조금

- o 의무자조금 총회의장·부의장·감사 선출규정 준용 또는 자체 정관, 선거규정에 정함

2) 의무자조금

■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① 총회 의장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대의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음(시행규칙 제 11조)

-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선거 장소 및 후보자 등록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함
- ③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명 이상(대의원의 경우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단체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함

-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대의원) 1명이 1표를 행사
- ⑤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最多) 득표한 후보자(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하 “최다득표자”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장으로 선출.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만으로 의장을 선출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대의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음
 - (1). 제3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 (2). 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 의장으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함
- ⑧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의장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함

2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① 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시행규칙 제12조)

- *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② 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대의원) 중에서 총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함

3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① 총회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대의원)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음(시행규칙 제13조)

-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총회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 의장 또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5명(대의원의 경우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함

- 이 경우 추천받은 사람의 수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많은 표를 얻은 사람(2명 이상이 같은 수의 표를 얻어 감사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부터 차례로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하고,
-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다음 득표자를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함.

4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시행규칙 제14조)

-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 등 선출

1) 임의자조금

- o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규정 준용 또는 자체 정관, 선거규정에 정함

2) 의무자조금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공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함(시행령 제3조)
- ② 의무농수산업자조금을 조성」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일시 및 장소, 대의원후보자의 등록 장소, 선거인 명부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등을 공고하여야 함.
- ③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의원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 하여야 함
- ④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10일 전까지 대의원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함
- (대의원의 선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산업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의원을 두어야 함.(시행령 제4조)

- (1). 농수산업자의 수가 10만명 이상 : 150명 이상 250명 이하
- (2). 농수산업자의 수가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80명이상 150명 미만
- (3). 농수산업자의 수가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 50명 이상 80명 미만
- (4). 농수산업자의 수가 1천명이상 5천명 미만 : 30명 이상 50명 미만
- (5). 농수산업자의 수가 1천명 미만 : 20명 이상 30명미만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확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2). 시·군·자치구별

③ 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별(이하 “선출구별”이라 한다)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음.

- 이 경우 농수산업자 수와 생산량·출하량은 법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함.

$$\text{선출구별 대의원 수} = \left(\frac{\text{선출구역내의 해당 농수산물 선출구별 농수산업자 수}}{\text{해당 농수산물 전체 농수산업자 수}}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선출구역내의 해당 농수산물 선출구별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text{해당 농수산물 전체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함.

- (1).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
- (2). 해당 선출구역의 농수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선거인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함.

⑥ 투표는 직접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

만 유효한 것으로 봄.

-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투표 장소에 선거당일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함.
- ⑧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됨.
 - (1).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 무투표당선. 이 경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당선자 수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두어야 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 (2).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 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⑨ 의무자조금단체는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함.
 -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투표 방법과 그 밖에 대의원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함.

3 (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缺員)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수가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두어야 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시행령 제5조)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함

4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 선출) 시행규칙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제12조(총회의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3조(총회 감사의 선출방법)까지를 각각 준용함.(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업자”는 각각 “대의원”으로 보고,
-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업자 10명”은 “대의원 5명”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표자”는 “대의원”으로 보고, 제13조제2항 전단 중 “농수산업자 5명”은 “대의원 2명”으로 봄.

다. 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자격·선출 등

1) 임의자조금

- o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 선출규정 준용 또는 자체 정관, 선거규정에 정함

2) 의무자조금

1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의 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농수산업자(대의원) 중 총회(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6조).

-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음.

- ②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역별 농수산업자, 품목별 생산량 또는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 수를 배분하고, 총

회 개최 전에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음.

-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음.
- ④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함.
 - 다만, 사유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 아니할 수 있음.
- 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위원을 배분한 경우에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농수산업자는 해당지역의 농수산업자 5명(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함.
- ⑥ 위원의 선출은 총회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함
 -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
- ⑦ 그 밖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총회 선거규정으로 정함.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5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음

-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2). 법 제32조(지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 보고, 서류 제출, 서류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계작성·관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위임

가. 통계의 작성·관리 권한 위임

1 (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28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법 제33조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통계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의무자조금 설치) 또는 제22조(임의자조금 설치)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함.(시행령 제6조)

(1). 농수산업자의 수

- (2). 법 제8조제2항(의무자조금의 한도)에 따른 평균 거래가격. 이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가격의 통계가 없을 경우 소매가격으로 기준으로 한다.
-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 (4). 수출량 및 수출액
- (5). 수입량 및 수입액

3 (통계작성·관리 및 제공업무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33조제2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위탁(시행령 제7조)

* 법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1 (과태료 부과·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시행령 제7조)

* 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 법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 법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2). 법 제37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법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7. 자조금 운용 평가

■ (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31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2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자조금 운용 평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경제·경영 분야, 재무·회계 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로 모두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9조)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자조금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자조금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자조금단체의 일반 현황과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생산·유통·수출입 등 내·외부 환경 분석

(2). 자조금의 조성, 운용 실태 및 성과에 관한 분석

(3).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대표성

(4). 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가능성 등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책

(5). 제30조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 등의 반영 정도

- ⑤ 자조금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과)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출연금 등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

- * 고시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
- (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
 - (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
 - (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 (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
 - (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 ② 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각 호를 포함한다.
- (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실행 실적
 - (2). 농수산업자 영입·교육 실적
 - (3).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 실적
 - (4). 조사·연구 실적
 - (5). 그 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 ③ 평가결과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자조금단체

- 사업비 10억 이상(국고보조금 포함)을 운용하는 자조금단체는 3년마다 1회씩 기존 자조금사업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 사업성과

-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는 농수산물자조금법 시행('13. 2. 23)이후 2015년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사업에 반영
 - * 자조금조성액이 5억원 미만인 자조금단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 용역의뢰는 aT 등을 통해 공동발주 할 수 있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기획팀)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4. 4.30.까지 사업총괄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4년차가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산지유통팀)
 - 평가지표 보완 : 전년도 사업평가 후 자조금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 가능성, 자조금사업 기반조성, 자조금사업 추진능력 등
 - 평가일정 : 익년 4.30

농림수산물식품부(담당부서)

《사업평가》

- 자조금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와 부진단체는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2년 이하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자조금단체의 사업신청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의 50%를 사업실

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한 후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우수(80점 이상) : 국고보조금의 50% 지원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국고보조금의 40% 지원
- 미흡(60점 미만) : 국고보조금의 30% 지원

8. 관리감독 및 보고사항

가. 지도감독(법 제32조 지도·감독)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함.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나. 지도감독 결과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음.(시행규칙 제30조)

※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품목 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지도·감독
- 자조금의 한도 및 산정기준 변경은 품목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결과를 사업총괄과(원예산업과)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품목별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품목담당부서)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 조성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품목별 점검결과를 사업총괄부서에 통보

다. 승인 및 보고사항

1) 임의자조금

-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법 제22조)
-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법 제26조)
- 자조금 운용 평가 결과보고서(법 제31조)
-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사업서(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결산보고서(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예산의 변경(고시 18조)

2) 의무자조금

- 의무자조금금 설치계획서(법 제6조)

- 의무자조금 설치 투표 결과(시행규칙 제7조)
- 의무자조금 결과 공표(법 제6조)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 한도변경 사항(시행규칙 제9조)
- 대의원회 설립계획서(시행규칙 제16조)
-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공시(시행규칙 제19조)
- 의무자조금 수납기관 및 위탁기관(법 제20조)
- 의무거출금 납부현황 자료(고시 제12조)
- 의무자조금 폐지 및 공표(법 제21조)
- 자조금 운용 평가 결과보고서(법 제31조)
-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결산보고서(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예산의 변경(고시 18조)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법 제28조 및 제33조,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사업추진결과 평가결과 보고서(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라. 기존 단체 보완사항

※ 법 시행 후('13. 2. 23이전 기존 설립된 단체)

■ 정관규정 사항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시행규칙 제6조)
- 총회 의장, 부의장, 감사의 권한과 직무(시행규칙 제10조)
- 총회 의장, 부의장,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 제11조 ~ 제13조)
- 대의원 선출(시행령 제4조)

2 의무자조금 단체

- ① 총회설치
- ② 대의원회 구성
-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④ 사무국 설치
- ⑤ 대납기관, 수납기관 지정
- ⑥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납부대상자, 산정기준, 납부방법, 운영계획) 수립
- ⑦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총회 승인 및 공시
- ⑧ 수납기관과 수수료 협의
- ⑨ 기타 :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규정, 선거규정, 자조금 회계 규정, 자조금 계약규정, 자조금관리 사무국 복무규정 등

3 임의자조금 단체

< 의무사항 >

- ①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②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납부대상자, 산정기준, 납부방법, 운영 계획) 수립
- ③ 기타 :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규정, 선거규정, 자조금 회계 규정, 자조금 계약규정, 자조금관리 사무국 복무규정 등

< 임의사항 >

-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 구성
- ② 사무국 설치
- ③ 대납기관, 수납기관 지정
- ④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총회 승인 및 공시
- ⑤ 수납기관과 수수료 협의

9. 벌칙

가. 벌금

1 (개인·단체 비밀누설·제공 등) 법 제28조제3항(통계의 작성·관리 등)*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4조)

* 법 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위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5조)

(1). 법 제17조제3항(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법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법 제26조제3항(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법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벌칙 : 회

계처리 위반자)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법 제36조)

-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과태료

1 (1천만원 이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7조 제1항)

- (1). 법 제4조(자조금의 용도)*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 법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법 제20조제2항(의무자조금 수납의 위탁)*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 법 제20조(의무자조금 수납의 위탁)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 시행규칙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 (3). 법 제21조제3항*(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 * 법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 법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 법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4). 법 제21조제7항 전단*(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 * 법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 (5). 법 제30조(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 법 제31조제1항(자조금 운용평가)*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법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300만원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7조 제2항)

(1). 법 제17조제6항(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 법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 시행규칙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법 제19조제1항(의무거출금의 납부)*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 법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법 제19조제2항(의무거출금의 납부)*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법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②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

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4). 법 제19조제3항(의무거출의 납부)* 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법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5). 법 제31조제1항(자조금 운용평가)*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 제32조제1항(지도·감독)*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법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3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시행령 제7조)

- * 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 법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 ** 법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2). 법 제37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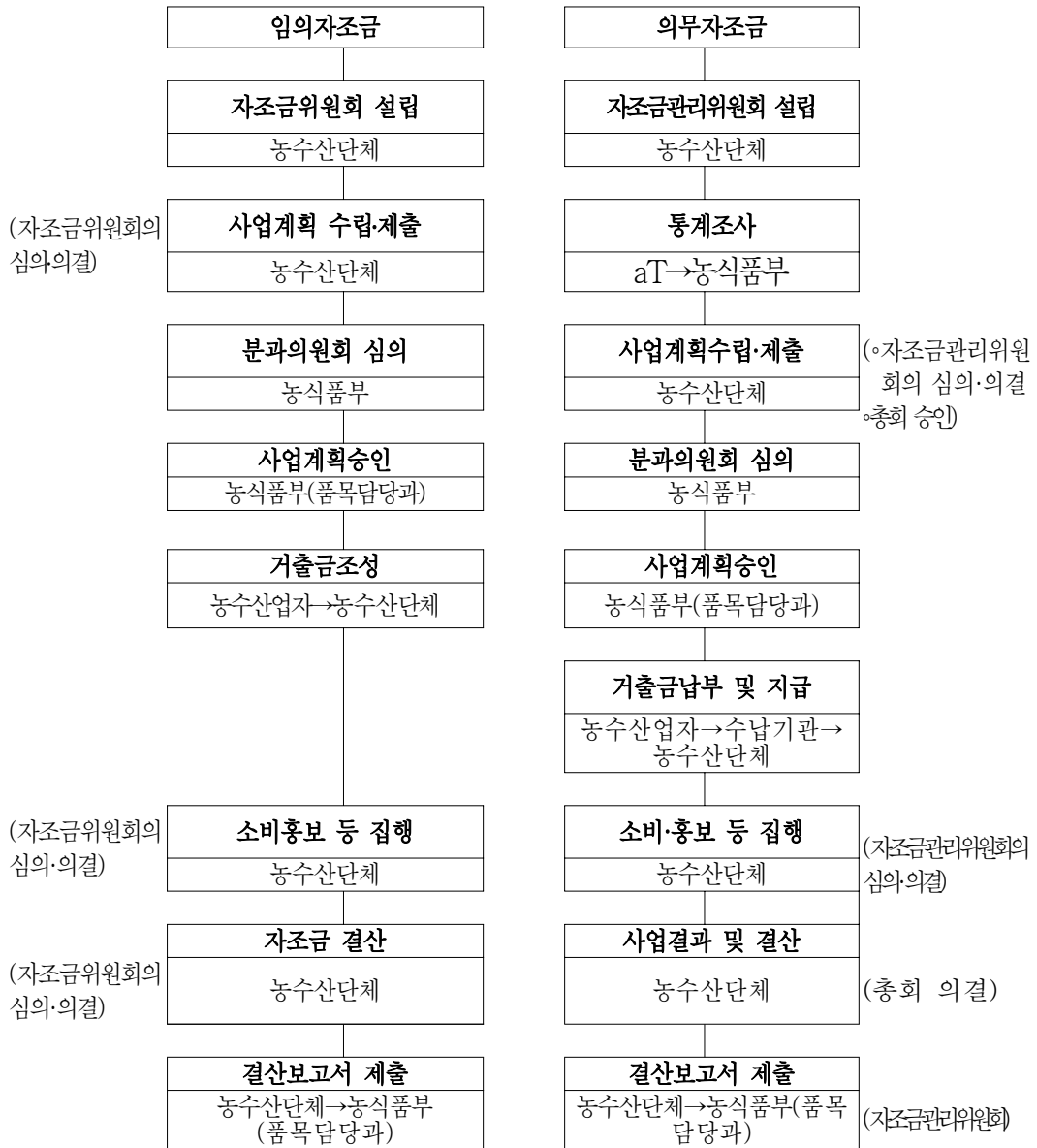
- * 법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비교

구 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비고
설치 근거	o법 제6조	o법 제22조	
설 치	o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 작성 → 장관승인(품목담당과) → 농수산업자 및 대의원회 2/3이상 투표, 2/3이상 찬성	o임의자조금설치계획서 작성 → 농수산업자 10/100이상 서명 → 장관승인(품목담당과)	
폐 지	o농수산업자가 재적 농수산업자의 10%이상 서명 → 총회폐지 요청 o농수산업자 50%이상 폐지 요청	o농수산업자가 농수산업자 5% 이상 서명 →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폐지 요청	
운영 계획안	o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작성 → 총회의결 → 장관승인(품목담당과)	o임의자조금단체가 운영·관리 →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장관승인(품목담당과)	
설치 계획서 포함 사항	o의무자조금의 명칭 o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o의무거출금의 납부대상자 o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o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 기준 o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o임의자조금의 명칭 o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o임의거출금의 납부대상자 o임의자조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o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 계획	
거출금 한도	o농수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10이내	o임의자조금위원회 결정	
총회 구성	o의장 1, 부의장 1, 감사 2 ~ 5명, 임기 2년	o별도 규정없음(의무자조금 준용)	
(운영)	o정기총회 매년 1회, 임시 : 수시	o별도 규정없음(의무자조금 준용)	
(의결)	o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o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o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 운영계획 및 결산 o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2/10이상)	o별도 규정없음(의무자조금 준용)	

구 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비고
운영 AA경비	o조성액이 10억원 이상 20%, 10 억원 미만 30%(단, 2억원 한도)	o조성액이 10억원 이상 20%, 10 억원 미만 30%(단, 2억원 한도)	
운용 평가	o외부전문기관이 2년마다 평가 및 결과 보고	o외부전문기관이 2년마다 평가 및 결과 보고	

【참고 : 사업추진절차】



Ⅳ.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77	제1조 (목적) 177
제2조 (용어의 정의) 177	제2조 (급부금의 지정) 177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178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178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179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179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179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180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180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181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81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181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181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182	제6조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182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182	제6조의2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82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182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183	
제15조 삭제 183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184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184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184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185	
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185	
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186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186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186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186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187
	제10조의2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187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188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188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188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188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189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189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189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90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190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190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190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191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192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192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193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192
제33조 (강제징수) 194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194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194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195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195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196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196
제36조 (검사) 196	제17조 (사무의 위임) 196
제37조 (이의신청) 197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198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38조 (사무의 위임) 197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197	
제39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198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198	
제41조 (벌칙) 199	
제42조 (벌칙) 199	
제43조 (양벌규정) 199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정 1963.11. 1 법률 제1431호 전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4호 타법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1999. 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2001. 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2006.10. 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9. 1.30 법률 제9347호 일부개정 2011. 7.25 법률 제10898호</p>	<p>제정 1964. 4.21 대통령령 제1771호 전부개정 1969.11.14 대통령령 제4251호 전부개정 1987. 4. 3 대통령령 제12128호 일부개정 1988. 2.24 대통령령 제12400호 타법개정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8호 타법개정 1997. 2. 1 대통령령 제15265호 타법개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703호 타법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 타법개정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타법개정 2000. 7.27 대통령령 제16923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7호 일부개정 2005. 8.31 대통령령 제19030호 일부개정 2006. 5.22 대통령령 제19481호 타법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2007. 4.12 대통령령 제20003호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91호 타법개정 2008. 1.15 대통령령 제20548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 일부개정 2008. 9. 8 대통령령 제20989호 타법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8 대통령령 제21277호 일부개정 2009. 4.30 대통령령 제21450호 일부개정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1호 일부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4호 타법개정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2012. 6. 7 대통령령 제23842호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1.7.25></p> <p>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 	<p>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p> <p>제2조 (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p> <p>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p> <p>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p> <p>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 보조사업을</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p>[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p>[전문개정 2011.7.25]</p> <p>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p> <p>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10.26]</p> <p>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p>	<p>제6조(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p>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15조 삭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개정 2011.7.25></p>	<p>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1.7.25]</p> <p>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중앙관서의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 	<p>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우만 해당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p>	<p>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p> <p>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p>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p>	<p>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1.10.26]</p> <p>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p>[전문개정 2011.10.26]</p> <p>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p> <p>[본조신설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2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p>	<p>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p>	<p>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1.7.25></p> <p>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p>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p>	<p>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p>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26]</p> <p>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계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p>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p>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p> <p>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p>	<p>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1.10.26]</p> <p>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 <개정 2011.7.25></p> <p>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p>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p>[전문개정 2011.7.25]</p> <p>제36조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p>	<p>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26]</p> <p>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p>[전문개정 2011.10.26]</p> <p>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37조 (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p> <p>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p> <p>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 <개정 2011.7.25></p> <p>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10.26]</p>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보 조 금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p>[전문개정 2011.7.25]</p> <p>제41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p> <p>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p>[전문개정 2011.7.25]</p> <p>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p>	

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시행 2012.3.2]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89호, 2012.2.23,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개정 2008.8.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농림수산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8.8.1>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2008.8.1, 2010.12.6>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무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2008.8.1>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2008.8.1>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10.19, 2008.8.1>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10. "이차보전"이라 함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7.)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2008.8.1, 2008. 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2008.8.1>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0.29.>

②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용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④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0.29, 1999.11.8>

⑤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

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10>

⑦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⑧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7.23.>

⑨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1.8>

제5조(사업자금의 이월) ①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용자 조건의 결정) ①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③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7조(용자의 방법) ①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8.8, 1996, 10.19, 1997.10.29, 2000.11.13, 2008.8.1>

②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2008.8.1>

③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11.8>

⑥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2010.12.6>

⑦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 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2010.12.6>

제8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 할 때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당해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실적확인 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7.23, 2008.8.1. 2010.12.6. 2010.2.14>

④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2.14>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2010.2.14>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0>

②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③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④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보조금의 집행) ①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 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10.29, 1998.7.23.>

③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2010.12.6>

1.~6. <삭제 2010.12.6>

②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2010.12.6, 2011.7. >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8.8, 1997.10.29, 2008.8.1,>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및 제17조의1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신설 2010.12.6, 개정 2011.7. >

③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2010.12.6, 2011.7. >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

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0.29, 1998.3.9, 2010.12.6>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17조의1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개정 1998.7.23, 2010.12.6, 2011.7. >

④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2010.12.6>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7.23. 2010.12.6>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7.23, 2010.12.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7.23.>

⑤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2011.7 >

제15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2010.12.6, 2011.7 >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0.12.6>

③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998.7.23, 1999.11.8, 2010.12.6, 2011.7 >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2010.11. >

④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년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해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2010.1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2010.12.6>

제16조(지원의 제한) ①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보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10.29, 1997. 12.30, 1998.7.23, 2010.12.6, 2011.7 >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2008.8.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7.23, 2010.12.6>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개정 2010.12.6>

⑥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7.23.>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8.12.8>

⑦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과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2008.8.1>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7조의1(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개정 2011.7. >

③관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4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 및 제3항제1호·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11.7 >

④관리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7 >

제18조(보칙) ①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8.8.1>

②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③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개정 2010.12.6>

부칙 <제289호, 2012.2.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60호(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3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령집

2013년 4월 인쇄

2013년 4월 발행

발행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044-201-2235

인쇄처 : 아르빛 ☎ 02-503-3223